

##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506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1.

발 의 자 : 박완주 · 윤관석 · 권미혁

김해영 · 강병원 · 서영교

김상희 · 도종환 · 전혜숙

박광온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호).

##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금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,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.	제5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금치산자</u> , <u>한정치산자</u>	3. <u>피성년후견인</u> – <u>피한정후견인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